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신고대상자(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다음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해 신고해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합니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5.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6.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변동사항 작성요령

-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등 란에는 신고의무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순으로 적습니다.
(※ ① 신고의무자와의 관계란 기재요령: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3남”, “손자”, “외손자” 등)
- ④ 변동 전 병역사항란에는 이미 신고된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 18세 신고대상자 및 입양으로 인한 신고대상자의 경우 등 이미 신고된 병역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 ⑤ 변동된 병역사항란에는 신고된 병역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별 병역 변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1.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예시) 0000년 병역준비역 편입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복무 분야(군별)
 -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한다) 또는 복무기관
 - 다. 계급
 -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 마. 입영 연월일
 - 바.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 사. 전역·소집해제 사유
 4. 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전환복무 등으로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복무 분야(군별)
 -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한다) 또는 복무기관
 - 다. 계급
 -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합니다)
 -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 ⑥ 비고란에는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비공개 요구” 또는 “처분사유 비공개 요구”라고 적습니다.